

부부공동명의 진행 안내

마포 더 클래시 아파트 계약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 73조 4항 7호에 의거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.
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**공동명의를 희망하는 계약자님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*

1. 부부 공동명의 신청 일정 안내

신청 일시 : 매주 화요일, 목요일 10:00 ~ 16:00 (중식시간 : 12:00 ~ 13:00 제외)
 신청 장소 : 마포 더 클래시 분양홍보관 (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8길 8, 203동 상가 2-2호)
 신청 방법 : 유선 문의 후 방문 예약 (☎ 02-312-1419)

※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부부 공동명의 시 계약자(증여인)과 배우자(수증인)만 입장 가능합니다.
 단, 수증인 대리 방문 시 대리인만 입장 가능.

2. 부부 공동명의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

순서	내용												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증여계약서 작성 / 검인(마포구청 민원실 10번 창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비서류 : 증여계약서, 공급계약서 원본(아파트, 옵션), 도장(증여인, 수증인), 신분증 												
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동명의 접수 신청(전매동의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, 분양홍보관 방문) (일시 및 장소는 상기 표기 내용 참고) - 구비서류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계약자(증여인) ※ 반드시 본인 방문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배우자(수증인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- 공급 계약서 원본(아파트, 옵션)</td> <td>- 인감증명서 2부(본인 발급용)</td> </tr> <tr> <td>-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(원본)</td> <td>- 주민등록등본 2부</td> </tr> <tr> <td>- 인감증명서 3부(부동산매도용 2부, 일반용 1부/본인 발급용)</td> <td>- 신분증, 인감도장(미비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)</td> </tr> <tr> <td>- 주민등록등본 2부, 가족관계증명서 2부(분리세대인 경우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- 신분증, 인감도장(미비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)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대리인 방문 : 계약자(증여인)은 대리 불가, 배우자(수증인)만 대리 접수 가능 배우자(수증인) 대리 방문 시 상기 서류 외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추가 필요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 방문 및 접수해야하며, 대리접수 불가 ※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“상세” 로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하며, “주민번호 뒷자리” 전체 공개, 본인 발급용으로 제출</p>	계약자(증여인) ※ 반드시 본인 방문	배우자(수증인)	- 공급 계약서 원본(아파트, 옵션)	- 인감증명서 2부(본인 발급용)	-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(원본)	- 주민등록등본 2부	- 인감증명서 3부(부동산매도용 2부, 일반용 1부/본인 발급용)	- 신분증, 인감도장(미비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)	- 주민등록등본 2부, 가족관계증명서 2부(분리세대인 경우)		- 신분증, 인감도장(미비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)	
계약자(증여인) ※ 반드시 본인 방문	배우자(수증인)												
- 공급 계약서 원본(아파트, 옵션)	- 인감증명서 2부(본인 발급용)												
-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(원본)	- 주민등록등본 2부												
- 인감증명서 3부(부동산매도용 2부, 일반용 1부/본인 발급용)	- 신분증, 인감도장(미비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)												
- 주민등록등본 2부, 가족관계증명서 2부(분리세대인 경우)													
- 신분증, 인감도장(미비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)													
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분양권 전매동의서 발급(LH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매동의서 신청 및 발급은 사업주체에서 대행 처리 (업무 처리, 약 2주 소요) - 전매동의 신청 서류는 홍보관에 비치 												
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급 계약서 수령(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급 계약서의 수령은 계약자(증여인) 또는 배우자(수증인) 외 제 3자 불출 불가하며, 수령 방문 시 신분증 지참 												

※ 유의사항

본 부부 공동명의 안내문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제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, 서류 미비 세대는 업무 진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증여 계약 후, 증여세를 자진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수증자의 주소지(신고서 제출일 현재)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홈택스 전자 신고 가능)
 증여세 신고 및 증여로 발생하는 세금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(126)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